

1. 개정 이유

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“사전검토” 제도가 도입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(법률 제21679호, 2026.5.19. 공포, 2026.11. 20.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산정기준 및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위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사전검토” 업무에 수반되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반영(안 제156조, 별표 10의3)
- 나. “사전검토”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(안 별표 7, 별표 9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12조제1항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·신고 및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

별표 7 제11호의2 중 “여부”를 “여부 및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”로 한다.

별표 9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의2.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에 따른 업무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

별표 10의3 제1호 중 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신고”를 “법 제12조제1항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·신고 및 사전검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6조(부담금 산정기준 등) ① (생략)	제156조(부담금 산정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산 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<u>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설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</u>	1. <u>법 제12조제1항 및 제100조 의2제1항에 따른 인가·신고 및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</u>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